# 삼성생명 희망사랑보험 5.0(무배당)





## 감사의 글

삼성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든든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삼성생명 3만여 컨설턴트와 임직원 일동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신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보험회사에 걸맞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는 삼성생명 이 함께 하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보험약관'에 대하여

##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기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본 약관집의 구성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용어 해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 다. 이 내용은 표준약관 조항과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등을 들어 설 명한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II

주요내용 요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등 가입하신 보험약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약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은 특약 약관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꼼꼼히 내용을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문의사항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 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 거나 약관을 분실하였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 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br/>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br/>변액보험 펀드변경, 보험료납입 등콜센터 1588-3114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br/>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

청, 각종 상담문의 등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 01. 주요 보험용어 해설
- 0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0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 01. 주요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야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 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 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원인이되는사고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 을 갖는 사람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 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에게 돌려주는 금액

## 0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1. 보험금의 청구 방법

-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플라 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 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 금 전용 콜센터(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장해	진단	실손	입원,통원 수술, 골절
고객플라자 /지점방문	•	•	•	•	•
우편		•	•	•	•
FAX/인터넷 /모바일				•	•

(※) 단, FAX/인터넷/모바일 접수의 경우 접수가능 금액 등의 제한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의 지급 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 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u>주 의</u>

· 위 내용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금융거래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 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 · 부당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삼성생명이 처리하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처리정지권)

- · 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 · 관리 · 상담, 기타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 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하시거나, 인 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시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한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제공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께 연락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전화(080-331-3114)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MY삼성생명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MY삼성생명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제공사실통보요구

·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플라자 방문, 회사 대표 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1 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 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 고객플라자,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 삭제를 요구하실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 · 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 ·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 · 삼성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조회, 제공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개인신용 정보관리 · 보호부서 : 02-2259-70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대로74길 11 (삼성전지빌딩))
-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I

- 01. 주요내용 요약서
- 02. 가입자 유의사항
- 03. 한눈에 보는 가입부터 지급까지



## 01.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 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공인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 역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 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5.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6. 삼성생명 상담 채널 안내

삼성생명은 항상 고객님 가까이에서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MY삼성생명 www.samsunglife.com

MY삼성생명에 접속하시면 고객님의 계약사항, 보장내역 조회, 보험 계약대출 및 상환업무 등 모든 보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MY삼성생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MY삼성생명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MY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 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 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02.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 리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이 계약은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금지급 관련

- ·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03. 한눈에 보는 가입부터 지급까지

## STEP 01 보험상품 선택 및 상품설명

고객님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신 후, 보험안내자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제18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STEP 02 청약서 작성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피보험자 서면동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 계약의 무효

- · 계약 전 알릴 의무 청약서상 피보험자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물어 보는 질문란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이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고객님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피보험자 서면동의 계약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 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STEP 03 보험계약체결(회사 승낙)

회사가 고객님이 청약하신 사항을 심사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승낙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 STEP 04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하신 보험상품 약관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구비서 류 및 청구절차는 콜센터(1588-3114) 또는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하시 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STEP 05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회사가 고객님이 청구하신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조항 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보험약관

- 00. 상품 목차
- 01. 주계약 약관
  - 01-1. 상황별 목차
  - 01-2. 조항별 목차
- 02. 특약 약관
- 03.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



## 00. 상품 목차

주계약 및	희망시랑보험5.0(무배당)	1
	희망사랑보험5.0(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	58
<del>종속</del> 특약	희망사랑보험5.0(무배당) 희망사랑특약	74
부록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	89

## 희망사랑보험 5.0 (무배당)

약관



## 01-1. 상황별 목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제2조(용어의 정의)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제17조(청약의 철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가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제23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고 싶어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계약의 변경에 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싶어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제10조(주소변경통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21조(보험나이)

## 01-2. 조항별 목차

<b>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b> 제 1 조 [목적]	6
제2조[용어의정의]	6
제2 관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지급사유]	7
제4조[보험금지급에 관한세부규정]	8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0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0 10
제 / 조 [모임금의 8구]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1
제0조[모임급의 제급교자]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2
제 10조 [주소변경통지]	12
제 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2
제 12조 [대표자의 지정]	12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 13조 [계약전 알릴 의무]	13
제 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3
제 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14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6조 [보험계약의 성립]	15
제 17조 [청약의 철회]	15
제 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6
제 19조 [계약의 무효]	17
제 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8
제 21 조 [보험나이]	18
제 22조 [계약의 소멸]	19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3 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0
제 24조 [제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 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1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1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1
제 28 조 [간제진해 등으로 이해 해지되 계약이 트별브화(충려히보)]	21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 2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2
제 3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2
제 3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2
제 32 조 [해지환 <del>급금</del> ]	23
제 33 조 [보험계약대출]	23
제 34조 [배당금의 지급]	23
제7관분쟁의조정등	
제 35 조 [분쟁의 조정]	23
제 36 조 [관할법원]	23
제 37 조 [소멸시효]	24
제 38조 [약관의 해석]	24
제 39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24
제 40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4
제 41 조 [개인정보보호]	25
제 42 조 [준거법]	25
제 43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5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26
(별표 2) 재해분류표	27
(별표 3) 장해분류표	28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	55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6

## 희망사랑보험 5.0(무배당)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설명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지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 1년차이자 = <u>100원</u> ×10% = 10원 원금
- · 2년차이자 = (<u>100원</u> + <u>10원</u>) × 10% = 11원 원금 1년차이자
-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del>급금</del>: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지급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 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지급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단,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제외 합니다): 미래설계자금 지급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지 급
- (이하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합하여 "재해장해 보험금"이라 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설명

## 〈제4조 제9항 제1호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빼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 제9항 제2호 예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빼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①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

한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관할경찰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 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용어 〈보험금 가지급제도〉

해설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

#### 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 용어 〈연대(連帶)〉

해설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명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기재 하지 않아 회사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이미 지급한 미래 설계자금 제외)를 돌려 드립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7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용어 〈전문보험계약자〉

해설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 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통신판매계약〉

해설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계약일 경우

용어 〈법정상속인〉

해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 에 따라 상속받는 자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이미 지급한 미래설계자금 제외)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가입금액
  - 2.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 다.

#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 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제21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 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

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 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

# 〈보험나이 계산 예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 재 일자가 2014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6세가 됩니다.

- · 2014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 = 25년 6개월 11일 = 26세

#### 제22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 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 〈책임준비금〉

# 해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 다.

-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실종선고〉

해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3조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 〈보장개시일〉

해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 초과 청약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계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계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계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3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3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설명

##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적 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 변동현황"에서 공시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 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설명

#### 〈소멸시효〉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 도 2018년 1월 2일까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용어 해설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41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 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1) 교통재해장해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6,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2) 일반재해장해보험금(약관 제3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3,000만원 ×해당 장해지급률

# (3) 미래설계자금(약관 제3조 제3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부터 만1년이 지난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단,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은 제외합니다)
지급금액	20만원

<sup>(㈜</sup>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4) 만기보험금(약관 제3조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지급금액	20만원

# 재 해 분 류 표

# 별표2

#### 1. 재해의 정의

- 이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 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워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중 법적 처형(Y35.5)
- ③'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 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장해분류표

# □총칙

#### 1. 장해의 정의

별표3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 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 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 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특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특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2. 신체 부위

'신체 부위'라 함은 ① 눈② 귀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⑤ 외모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봅니다.

#### 3. 장해의 판정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2)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 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

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4)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 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 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 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5) 장해 진단서에는 ① 장해 진단명 및 발생 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 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 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장해분류별 판정 기준

#### 1. 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 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 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5

- 1) 시력 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합니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 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 시력을 말합니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 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 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합니다.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 수동(Hand Movement) <sup>주1</sup>, 안전 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합니다.
- ※ 주1) 안전 수동: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

- 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 수지: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 태
- 5) 안구(눈동자) 운동 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 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수 있는 범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 (장해 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아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 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 범위 합계를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 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 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합니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 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정해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 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2. 귀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45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나. 장해판정 기준

- 1) 청력 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합니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괏값 차이 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 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 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 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 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합니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합니다.

####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 소견	1) 양측 전정 기능 소실 2) 양측 전정 기능 감소 3) 일측 전정 기능 소실	14 10 4
치료 병력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미만)	6 4 2 0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기능정해 소견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 었을 때 판정하며, 뇌 병변 여부, 전정 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 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합니다.

- 가) 뇌영상검사(CT, MRI)
- 나) 온도 안진 검사, 전기 안진 검사(또는 비디오 안진 검사) 등

# 3.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1) '코의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3)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은 후각인지 검사, 후각역치 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 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0 11 12 11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1

-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 치아)와 아랫니(하악 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 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 운동 제한이나 저 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이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뚜렷한 개구 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이래턱(상·하약)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 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 라) 양측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 기능 검사(비디오 투시 검사) 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 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약간의 개구 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 (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 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 기능 검사(비디오 투시 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 혈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 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 상태에서 위·이래턱(상·하약)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인접 치 이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이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 치아)와 아랫니 (하악 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정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 언어 지수 25 미만인 경우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정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 언어 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 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 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 상으로 금관 치료(크라운 보철 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 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합니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장해로 평가합니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 나. 장해판정 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 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각 판정 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 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사정합니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 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 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합니다.

#### 6. 척추(등뼈)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합니다. 제 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합니다.
- 2) 척추(등뼈)의 기형 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습니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 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 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 [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기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검소비를 압박률로 정합니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용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

- 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합니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 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 장해 및 기형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6) 심한 운동 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 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이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 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 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 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 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착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엮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 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 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 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 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 되고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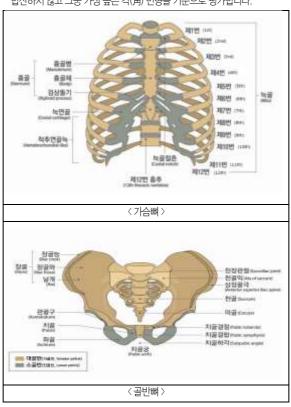
#### 7. 체간골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15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10
긴때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봅니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 니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합니다. 다발성 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8. 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6-11 1211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정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정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징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징해가 발생한 경우)는 징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 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 관절(주관절), 손목 관절 (완관절)을 말합니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 관절(완관절)부터(손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6) 팔의 관절 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해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 기능정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합니다. 단, 관절 기능장해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 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 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이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쥐</sup>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 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 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정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정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 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 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합니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촉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 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6)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무릎 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정해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 기능장해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 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이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이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 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이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 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 측과 환 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합니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이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 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

합니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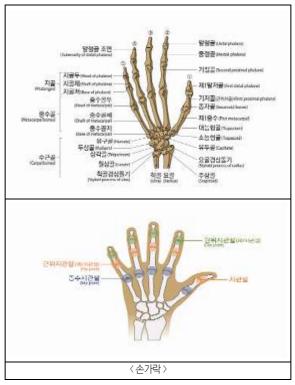
#### 10. 손가락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정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합니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릅니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 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9) 손가락의 관절 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해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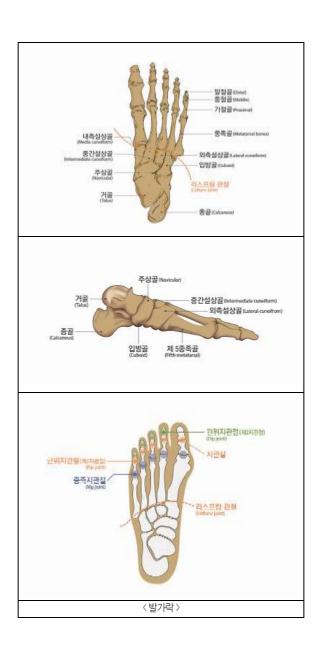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징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	5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8
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3
을 때 또는 뚜렷한 정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가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가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합니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 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뼈 일부가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 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 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8) 발기락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정해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12.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지급률
100
75
50
30
15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정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 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 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 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 질환 또는 폐 부분 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

- 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 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 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 생식기계 장해 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지급률을 준용합니다.
- 8) 상기 장해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 간 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해판정 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정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정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징해 평가표' 상 지 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습니 다.
-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 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 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합니다.
- 마) 장해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합니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 장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 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 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정신행동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 정 기준」의 '능력 장해측정 기준<sup>'취</sup>상 6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 주) 능력 장해측정 기준의 항목 : ② 적절한 음식 섭취, ④ 대소변 관리, 세 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⑤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②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⑥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 기 준」의 '능력 장해측정 기준' 상 6개 항목 중 2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 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 정 기준」의 '능력 장해측정 기준' 상 6개 항목 중 2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 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 니다.
- 이)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돼야 하며,자

- 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차) 정신행동 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합니다.
- 카) 정신행동 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 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 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다만, 보호자나 환 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 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 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 집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전환정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 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치매의 장해 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돼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다만,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 치매 척 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 4) 뇌전증(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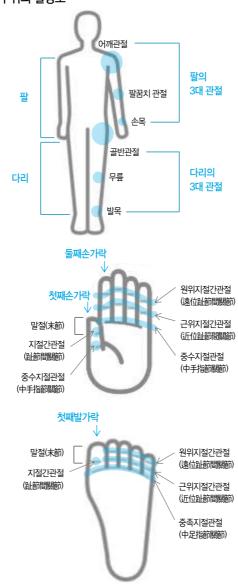
-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 (경련, 의식 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심한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 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라) '뚜렷한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마) '약간의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바) '중증 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 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 사) '경증 발작'이라 함은 운동 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 붙임 <u>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u>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ul> <li>□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 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li> <li>○ 수저 사용이 불기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보	<ul>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 변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 혈적으로 자가 인공 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li> <li>-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li> </ul>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 <del>급률</del>
목욕	<ul> <li>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li> <li>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li> </ul>
옷 입고 벗기	<ul>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 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 신체부위의 설명도



# 교통재해분류표

- 별표4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 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 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공작물 등으로 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 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 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간	적립이율
1 1	지급기일의	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교통/일반 재해장해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지급기일의 90일 이내	의 61일 이후부터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미래설계지금 (제3조 제3호)	미래 설계자금 지급해당 일의 다음 날	보험기간 만기일 (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이 없게 된 날) 이 내	평균공시이율
	다음 글 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단,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이 없게 된 날) 다 음 날 이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I 지급일까지	다음 날부터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만기보험금 (제3조 제4호) 및 해지환급금 (제32조 제1항)		가 발생한 날의 터 청구일까지의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I 지급일까지	가음 날부터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취 1. 미래설계자금 및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 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 희망사랑보험 5.0(무배당) 치료비보장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

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 제2조의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3참조) 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조의4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제2조의5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약 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 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조혈모세포이식의료기관에서 항 암화학요법, 면역억제제, 방사선 치료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 치료 를 시행하여 피보험자의 병든 골수 및 면역기능을 제거한 후 다음의 각호 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 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 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 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 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자가(autologous)말조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 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 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주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의6 ["중대한 화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이라 함은 전신피부의 20%이상이 3도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화상을 입은 체표면적은 "The Rule of 9", 또는 "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의 진단 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제2조의7 ["재해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 제2조의8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 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보험금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단,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보험금(1회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단,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 (1회에 한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경우(1회에 한합니다)
  - : 중대한화상진단보험금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 절" 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당): 재해골절지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계속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 화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보장을 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0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중대한 화상 관련), 골절진단서, 입원증명서, 수 술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 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특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3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詩約)하고 회사가 승낙 (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특약은 청약일, 진단특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 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특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3조의2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 2. 피보험자가 특약 체결 시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 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17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일시납이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이 특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2조 [해지화급급]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 제23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1) 입원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재해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경우	
지급금액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2)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험금(약관 제3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 술"을 받았을 경우 (1회에 한하며,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지급금액	2,000만원

# (3) 5대장기이식수술보험금(약관 제3조 제3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 을 받았을 경우 (1회에 한하며,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지급금액	2,000만원	

# (4) 중대한화상진단보험금(약관 제3조 제4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지 <del>급금</del> 액	2,000만원

# (5) **재해골절자금(약관 제3조 제5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 여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재해골절 발생1회당 10만원 [단, 동일 재해로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함]

##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해당분류표와 동일

## 별표3

별표2

# 질병 및 재해 분류표

#### 1. 질병 및 재해의 정의

- 이 보험약관에서 질병 및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 2. 질병 및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질병 및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⑧ 고의적 자해로 인한 경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해는 제외]
- (취) 1.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별표4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

대상이 되는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1시행) 중 다음 에 적은 분류번호를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치아의 파절 제외)	(S02.5는 제외)
2. 목의 골절	S12
3. <del>늑골, 흉골</del> 및 <del>흉추</del> 의 골절	S22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8. 대퇴골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sup>(㈜</sup>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에서 상기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2항 관련)

구 분	기간	적립이율
입원보험금, 조혈모세포이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식수술보험금, 5 대장기이식 수술보험금,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중대한화상진 단보험금, 재해골절자금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제3조 제1호 에서 제5호)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제22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취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 희망사랑보험 5.0(무배당) 희망사랑특약 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한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 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 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 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 제2조의3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같습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해가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 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 해로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 해

# 설명

#### 〈제4조 제9항 제1호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팔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제4조 제9항 제2호 예시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해지급 률 5%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해가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해가 된 경우 이 특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해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해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5%를 뺀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⑪ 이 특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 합니다
- ⑭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연명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특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 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의하여 징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징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우 질병 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특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3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詩約)하고 회사가 승낙 (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특약은 청약일, 진단특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 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특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3조의2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상 또는 기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직계존속 중 계약자가 지 정한 자로 합니다.

####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특약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 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 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이 유효합니다.

#### 용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해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특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4.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에 의한 소액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⑤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16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 2.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 주계약이 소멸한 경우
    -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제4호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17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은 일시납이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이 특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특약은 일시납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 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7관 기타사항

## 제23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별표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 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500만원

# (2) 재해장해보험금(약관 제3조 제2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5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별표2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해당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해당분류표와 동일

별표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2항 관련)

	구 분	기간	적립이율
	사망보험금 재해장해보험금 (제3조 제1호 에서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지급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취)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가나다 순)

-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 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법령은 2018년 2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부록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이하 생략)

##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오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 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 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 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 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 는 아니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cdot$  도난  $\cdot$  유출  $\cdot$  위조  $\cdot$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 ■ 민법

##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 상법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 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 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 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 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 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 ■ 의료법

####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 · 해산부(解産婦) · 산욕부(産褥

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가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 무보조에 대한 지도

##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이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 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 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기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 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 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 서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 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4~9. (생략)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 재정능력 · 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 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